「내각법」

- **국 가·지 역**: 일본
- **법 률 번 호**: 소화22<1947>년 법률 제5호
- **공 포 일**: 1947년 1월 16일
- **개 정 일**: 2014년 6월 3일

원문	번역문
第一条 内閣は、国民主権の理念にのつとり、日本国憲法第七十三条その他日本国憲法に定める職権を行う。 ２ 内閣は、行政権の行使について、全国民を代表する議員からなる国会に対し連帯して責任を負う。	제1조 ① 내각은 국민주권의 이념에 따라 「일본국헌법」 제73조, 그 밖에 「일본국헌법」에서 정하는 직권을 행사한다. ② 내각은 행정권의 행사에 대하여 국민을 대표하는 의원으로 구성된 국회에 대하여 연대하여 책임을 진다.
第二条 内閣は、国会の指名に基づいて任命された首長たる内閣総理大臣及び内閣総理大臣により任命された国務大臣をもつて、これを組織する。 ２ 前項の国務大臣の数は、十四人以内とする。ただし、特別に	제2조 ① 내각은 국회의 지명에 따라 임명된 수장인 내각총리대신 및 내각총리대신에 의하여 임명된 국무대신으로 구성된다. ② 제1항의 국무대신의 수는 14명 이내로 한다. 다만, 특별

必要がある場合においては、三人を限度にその数を増加し、十七人以内とすることができる。	히 필요한 경우에는 3명의 한도에서 그 수를 늘려 17명 이내로 할 수 있다.
第三条 各大臣は、別に法律の定めるところにより、主任の大臣として、行政事務を分担管理する。 ○２　前項の規定は、行政事務を分担管理しない大臣の存することを妨げるものではない。	제3조 ① 각 대신은 따로 법률로 정하는 바에 따라 주임대신으로서 행정사무를 분담·관리한다. ② 제1항은 행정사무를 분담·관리하지 아니하는 대신이 존재함을 방해하지 아니한다.
第四条 内閣がその職権を行うのは、閣議によるものとする。 ○２　閣議は、内閣総理大臣がこれを主宰する。この場合において、内閣総理大臣は、内閣の重要政策に関する基本的な方針その他の案件を発議することができる。 ○３　各大臣は、案件の如何を問わず、内閣総理大臣に提出して、閣議を求めることができる。	제4조 ① 내각은 내각회의에 따라 그 직권을 행사한다. ② 내각회의는 내각총리대신이 주재한다. 이 경우에 내각총리대신은 내각의 중요정책에 관한 기본 방침, 그 밖의 안건을 발의할 수 있다. ③ 각 대신은 안건 여하를 불문하고 내각총리대신에게 제출하여 내각회의를 요구할 수 있다.
第五条 内閣総理大臣は、内閣を代表して内閣提出の法律案、予算その他の議案を国会に提出し、一般国務及び外交関係について国会に報告する。	제5조 내각총리대신은 내각을 대표하여 내각제출법률안, 예산, 그 밖의 의안을 국회에 제출하고 일반국무 및 외교관계에 대하여 국회에 보고한다.

第六条 内閣総理大臣は、閣議にかけて決定した方針に基いて、行政各部を指揮監督する。	제6조 내각총리대신은 내각회의에서 결정한 방침에 따라 행정 각부를 지휘·감독한다.
第七条 主任の大臣の間における権限についての疑義は、内閣総理大臣が、閣議にかけて、これを裁定する。	제7조 주임대신 간 권한에 대한 의의는 내각총리대신이 내각회의에서 재정(裁定)한다.
第八条 内閣総理大臣は、行政各部の処分又は命令を中止せしめ、内閣の処置を待つことができる。	제8조 내각총리대신은 행정각부의 처분 또는 명령을 중지시키고 내각의 조치를 기다릴 수 있다.
第九条 内閣総理大臣に事故のあるとき、又は内閣総理大臣が欠けたときは、その予め指定する国務大臣が、臨時に、内閣総理大臣の職務を行う。	제9조 내각총리대신에게 사고(事故)가 있을 때 또는 내각총리대신이 궐위(闕位)된 때에는 미리 지정한 국무대신이 내각총리대신의 직무를 수행한다.
第十条 主任の国務大臣に事故のあるとき、又は主任の国務大臣が欠けたときは、内閣総理大臣又はその指定する国務大臣が、臨時に、その主任の国務大臣の職務を行う。	제10조 주임 국무대신에게 사고가 있을 때 또는 주임 국무대신이 궐위된 때에는 내각총리대신 또는 그가 지정한 국무대신이 임시로 주임 국무대신의 직무를 수행한다.
第十一条 政令には、法律の委任がなければ、義務を課し、又は権利を制	제11조 정령에는 법률의 위임이 있을 때에만 의무를 부과하거나 권리

限する規定を設けることができない。	를 제한하는 규정을 설치할 수 있다.
第十二条 内閣に、内閣官房を置く。 ○２　内閣官房は、次に掲げる事務をつかさどる。 一　閣議事項の整理その他内閣の庶務 二　内閣の重要政策に関する基本的な方針に関する企画及び立案並びに総合調整に関する事務 三　閣議に係る重要事項に関する企画及び立案並びに総合調整に関する事務 四　行政各部の施策の統一を図るために必要となる企画及び立案並びに総合調整に関する事務 五　前三号に掲げるもののほか、行政各部の施策に関するその統一保持上必要な企画及び立案並びに総合調整に関する事務 六　内閣の重要政策に関する情報の収集調査に関する事務 七　国家公務員に関する制度の企画及び立案に関する事務 八　国家公務員法（昭和二十二年法律第百二十号）第十八条の二（独立行政法人通則法（平	제12조 ① 내각에 내각관방을 둔다. ② 내각관방은 다음의 사무를 담당한다. 1. 내각회의사항의 정리, 그 밖에 내각의 서무 2. 내각의 중요 정책에 관한 기본 방침에 관한 기획 및 입안, 종합·조정에 관한 사무 3. 내각회의와 관련된 중요 사항에 관한 기획 및 입안, 종합·조정에 관한 사무 4. 행정각부의 시책의 통일성을 도모하기 위하여 필요한 기획 및 입안, 종합·조정에 관한 사무 5. 제2항부터 제4항까지에 해당하는 것 외에 행정각부의 시책에 관한 통일성 유지에 필요한 기획 및 입안, 종합·조정에 관한 사무 6. 내각의 중요 시책에 관한 정보의 수집·조사에 관한 사무 7. 국가공무원에 관한 제도의 기획 및 입안에 관한 사무 8. 「국가공무원법」(소화 22<1947>년 법률 제120호) 제18조의2[「독립행정법인통

成十一年法律第百三号）第五十四条第一項において準用する場合を含む。）に規定する事務に関する事務	칙법」(평성11<1999>년 법률 제103호) 제54조제1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사무에 관한 사무
九 国家公務員の退職手当制度に関する事務	9. 국가공무원의 퇴직수당제도에 관한 사무
十 特別職の国家公務員の給与制度に関する事務	10. 특별직 국가공무원의 급여제도에 관한 사무
十一 国家公務員の総人件費の基本方針及び人件費予算の配分の方針の企画及び立案並びに調整に関する事務	11. 국가공무원 총인건비 기본방침 및 인건비 예산배분방침의 기획 및 입안, 조정에 관한 사무
十二 第七号から前号までに掲げるもののほか、国家公務員の人事行政に関する事務（他の行政機関の所掌に属するものを除く。）	12. 제7호부터 제11호까지에 해당하는 것 외에 국가공무원의 인사행정에 관한 사무(다른 행정기관 소관 사무를 제외한다)
十三 行政機関の機構及び定員に関する企画及び立案並びに調整に関する事務	13. 행정기관의 기구 및 정원에 관한 기획 및 입안, 조정에 관한 사무
十四 各行政機関の機構の新設、改正及び廃止並びに定員の設置、増減及び廃止に関する審査を行う事務	14. 각 행정기관의 기구의 신설, 개정 및 폐지, 정원의 설치, 증감 및 폐지에 관한 심사 사무
○３ 前項の外、内閣官房は、政令の定めるところにより、内閣の事務を助ける。	③ 제2항 외에 내각관방은 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내각의 사무를 돕는다.
○４ 内閣官房の外、内閣に、別に法律の定めるところにより、必要な機関を置き、内閣の事務を助けしめることができる。	④ 내각관방 외에 내각에 따로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필요한 기관을 두고 내각의 사무를 돕게 할 수 있다.

第十三条 内閣官房に内閣官房長官一人を置く。 ２　内閣官房長官は、国務大臣をもつて充てる。 ３　内閣官房長官は、内閣官房の事務を統轄し、所部の職員の服務につき、これを統督する。	제13조 ① 내각관방에 내각관방장관 1명을 둔다. ② 내각관방 장관은 국무대신이 맡는다. ③ 내각관방장관은 내각관방의 사무를 총괄하고 소속 직원의 복무에 대하여 감독한다.
第十四条 内閣官房に、内閣官房副長官三人を置く。 ２　内閣官房副長官の任免は、天皇がこれを認証する。 ３　内閣官房副長官は、内閣官房長官の職務を助け、命を受けて内閣官房の事務（内閣人事局の所掌に属するものを除く。）をつかさどり、及びあらかじめ内閣官房長官の定めるところにより内閣官房長官不在の場合その職務を代行する。	제14조 ① 내각관방에 내각관방 부장관 3명을 둔다. ② 내각관방 부장관의 임면은 천황이 인증한다. ③ 내각관방 부장관은 내각관방 장관의 직무를 도와 명령에 따라 내각관방의 사무(내각인사국의 소관에 속하는 것을 제외한다)를 담당하고, 미리 내각관방 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내각관방 장관이 부재하는 경우 그 직무를 대행한다.
第十五条 内閣官房に、内閣危機管理監一人を置く。 ２　内閣危機管理監は、内閣官房長官及び内閣官房副長官を助け、命を受けて第十二条第二項第一号から第六号までに掲げる事務のうち危機管理（国民の生命、身体又は財産に重大な被害が生じ、又は生じるおそれがある緊急の事態への対処及び当該事態の発生の防止をいう。第十七	제15조 ① 내각관방에 내각위기관리감 1명을 둔다. ② 내각위기관리감은 내각관방 장관 및 내각관방 부장관을 도와 명령에 따라 제12조제2항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사무 중 위기관리(국민의 생명, 신체 또는 재산에 중대한 피해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긴급 사태에 대한 대처 및 그 사태 발생의 방지를 말한다. 제17

条第二項第一号において同じ。）に関するもの（国の防衛に関するものを除く。）を統理する。 ３　内閣危機管理監の任免は、内閣総理大臣の申出により、内閣において行う。 ４　国家公務員法第九十六条第一項、第九十八条第一項、第九十九条並びに第百条第一項及び第二項の規定は、内閣危機管理監の服務について準用する。 ５　内閣危機管理監は、在任中、内閣総理大臣の許可がある場合を除き、報酬を得て他の職務に従事し、又は営利事業を営み、その他金銭上の利益を目的とする業務を行つてはならない。	조제2항제1호에서 같다)에 관한 것(국가 방위에 관한 것을 제외한다)을 총괄한다. ③ 내각위기관리감의 임면은 내각총리대신의 신청으로 내각에서 실시한다. ④ 「국가공무원법」 제96조제1항, 제98조제1항, 제99조, 제100조제1항 및 제2항은 내각위기관리감의 복무에 대하여 준용한다. ⑤ 내각위기관리감은 재임 중 내각총리대신의 허가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보수를 받아 다른 직무에 종사하거나 영리 사업을 운영하고, 그 밖에 금전상 이익을 목적으로 하는 업무를 수행해서는 아니된다.
第十六条 内閣官房に、内閣情報通信政策監一人を置く。 ２　内閣情報通信政策監は、内閣官房長官及び内閣官房副長官を助け、命を受けて第十二条第二項第一号から第六号までに掲げる事務のうち情報通信技術の活用による国民の利便性の向上及び行政運営の改善に関するものを統理する。 ３　前条第三項から第五項までの規定は、内閣情報通信政策監について準用する。	제16조 ① 내각관방에 내각정보통신정책감 1명을 둔다. ② 내각정보통신정책감은 내각관방 장관 및 내각관방 부장관을 도와 명령에 따라 제12조제2항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사무 중 정보통신기술의 활용에 의한 국민의 편리성 향상 및 행정운영의 개선에 관한 것을 총괄한다. ③ 제15조제3항부터 제5항까지는 내각정보통신정책감에 대하여 준용한다.

第十七条 内閣官房に、国家安全保障局を置く。 2 国家安全保障局は、次に掲げる事務をつかさどる。 一 第十二条第二項第二号から第五号までに掲げる事務のうち我が国の安全保障（第二十二条第三項において「国家安全保障」という。）に関する外交政策及び防衛政策の基本方針並びにこれらの政策に関する重要事項に関するもの（危機管理に関するもの並びに内閣広報官及び内閣情報官の所掌に属するものを除く。） 二 国家安全保障会議設置法（昭和六十一年法律第七十一号）第十二条の規定により国家安全保障局が処理することとされた国家安全保障会議の事務 三 国家安全保障会議設置法第六条の規定により国家安全保障会議に提供された資料又は情報その他の前二号に掲げる事務に係る資料又は情報を総合して整理する事務 3 国家安全保障局に、国家安全保障局長を置く。 4 国家安全保障局長は、内閣官房長官及び内閣官房副長官を助け、命を受けて局務を掌理する。	제17조 ① 내각관방에 국가안전보장국을 둔다. ② 국가안전보장국은 다음의 사무를 담당한다. 1. 제12조제2항제2호부터 제5호까지의 사무 중 일본의 안전보장(제22조제3항에서 "국가안전보장"이라 한다)에 관한 외교정책 및 방위정책의 기본방침과 이들 정책에 관한 중요사항에 관한 것(위기관리에 관한 것, 내각공보관 및 내각정보관 소관에 속하는 것을 제외한다) 2. 「국가안전보장회의설치법」(소화61<1986>년 법률 제71호) 제12조에 따라 국가안전보장국이 처리하도록 되어 있는 국가안전보장회의의 사무 3. 「국가안전보장회의설치법」 제6조에 따라 국가안전보장회의에 제공된 자료 또는 정보, 그 밖의 제1호 및 제2호의 사무와 관련된 자료 또는 정보를 종합하여 정리하는 사무 ③ 국가안전보장국에 국가안전보장 국장을 둔다. ④ 국가안전보장 국장은 내각관방 장관 및 내각관방 부장관을 도와 명령에 따라 국무를 처리한다.

5　第十五条第三項から第五項までの規定は、国家安全保障局長について準用する。 6　国家安全保障局に、国家安全保障局次長二人を置く。 7　国家安全保障局次長は、国家安全保障局長を助け、局務を整理するものとし、内閣総理大臣が内閣官房副長官補の中から指名する者をもつて充てる。	⑤ 제15조제3항부터 제5항까지는 국가안전보장 국장에 대하여 준용한다. ⑥ 국가안전보장국에 국가안전보장국 차장 2명을 둔다. ⑦ 국가안전보장국 차장은 국가안전보장 국장을 도와 국무를 정리하고 내각총리대신이 내각관방 부장관보 중에서 지명하는 자가 맡는다.
第十八条 内閣官房に、内閣官房副長官補三人を置く。 2　内閣官房副長官補は、内閣官房長官、内閣官房副長官、内閣危機管理監及び内閣情報通信政策監を助け、命を受けて内閣官房の事務（第十二条第二項第一号に掲げるもの並びに国家安全保障局、内閣広報官、内閣情報官及び内閣人事局の所掌に属するものを除く。）を掌理する。 3　第十五条第三項から第五項までの規定は、内閣官房副長官補について準用する。	**제18조** ① 내각관방에 내각관방 부장관보 3명을 둔다. ② 내각관방 부장관보는 내각관방 장관, 내각관방 부장관, 내각위기관리감 및 내각정보통신정책감을 도와 명령에 따라 내각관방의 사무(제12조제2항제1호에 해당하는 것, 국가안전보장국, 내각공보관, 내각정보관 및 내각인사국의 소관에 속하는 것을 제외한다)를 처리한다. ③ 제15조제3항부터 제5항까지는 내각관방 부장관보에 대하여 준용한다.
第十九条 内閣官房に、内閣広報官一人を置く。 2　内閣広報官は、内閣官房長官、内閣官房副長官、内閣危機管理監及び内閣情報通信政策監を助け、第十二条第二項第二号から第五号までに掲げる事務につ	**제19조** ① 내각관방에 내각공보관 1명을 둔다. ② 내각공보관은 내각관방 장관, 내각관방 부장관, 내각위기관리감 및 내각정보통신정책감을 도와 제12조제2항제2호부터 제5호까지의 사무에 대하여 필

いて必要な広報に関することを処理するほか、同項第二号から第五号までに掲げる事務のうち広報に関するものを掌理する。 ３　第十五条第三項から第五項までの規定は、内閣広報官について準用する。	요한 공보에 관한 일 외에 같은 항 제2호부터 제5호까지의 사무 중 공보에 관한 것을 처리한다. ③ 제15조제3항부터 제5항까지는 내각공보관에 대하여 준용한다.
第二十条 内閣官房に、内閣情報官一人を置く。 ２　内閣情報官は、内閣官房長官、内閣官房副長官、内閣危機管理監及び内閣情報通信政策監を助け、第十二条第二項第二号から第五号までに掲げる事務のうち特定秘密（特定秘密の保護に関する法律（平成二十五年法律第百八号）第三条第一項に規定する特定秘密をいう。）の保護に関するもの（内閣広報官の所掌に属するものを除く。）及び第十二条第二項第六号に掲げる事務を掌理する。 ３　第十五条第三項から第五項までの規定は、内閣情報官について準用する。	제20조 ① 내각관방에 내각정보관 1명을 둔다. ② 내각정보관은 내각관방 장관, 내각관방 부장관, 내각위기관기감 및 내각정보통신정책감을 도와 제12조제2항제2호부터 제5호까지의 사무 중 특정비밀[「특정비밀보호에 관한 법률」(평성25<2013>년 법률 제108호) 제3조제1항에 따른 특정비밀을 말한다]의 보호에 관한 것(내각공보관의 소관에 속하는 것을 제외한다) 및 제12조제2항제6호의 사무를 처리한다. ③ 제15조제3항부터 제5항까지는 내각정보관에 대하여 준용한다.
第二十一条 内閣官房に、内閣人事局を置く。 ２　内閣人事局は、第十二条第二項第七号から第十四号までに掲げる事務をつかさどる。	제21조 ① 내각관방에 내각인사국을 둔다. ② 내각인사국은 제12조제2항제7호부터 제14호까지의 사무를 담당한다.

3　内閣人事局に、内閣人事局長を置く。 4　内閣人事局長は、内閣官房長官を助け、命を受けて局務を掌理するものとし、内閣総理大臣が内閣官房副長官の中から指名する者をもつて充てる。	③ 내각인사국에 내각인사국장을 둔다. ④ 내각인사국장은 내각관방 장관을 도와 명령에 따라 국무를 처리하며, 내각총리대신이 내각관방 부장관 중에서 지명하는 자가 맡는다.
第二十二条 内閣官房に、内閣総理大臣補佐官五人以内を置く。 2　内閣総理大臣補佐官は、内閣総理大臣の命を受け、国家として戦略的に推進すべき基本的な施策その他の内閣の重要政策のうち特定のものに係る内閣総理大臣の行う企画及び立案について、内閣総理大臣を補佐する。 3　内閣総理大臣は、内閣総理大臣補佐官の中から、国家安全保障に関する重要政策を担当する者を指定するものとする。 4　内閣総理大臣補佐官は、非常勤とすることができる。 5　第十五条第三項及び第四項の規定は内閣総理大臣補佐官について、同条第五項の規定は常勤の内閣総理大臣補佐官について準用する。	제22조 ① 내각관방에 내각총리대신 보좌관을 5명 이내로 둔다. ② 내각총리대신 보좌관은 내각총리대신의 명령에 따라 국가로서 전략적으로 추진해야 하는 기본 시책, 그 밖의 내각의 중요 정책 중 특정 정책과 관련된 내각총리대신이 시행하는 기획 및 입안에 대하여 내각총리대신을 보좌한다. ③ 내각총리대신은 내각총리대신 보좌관 중에서 국가안전보장에 관한 중요 정책을 담당하는 자를 지정한다. ④ 내각총리대신 보좌관은 비상근으로 할 수 있다. ⑤ 제15조제3항 및 제4항은 내각총리대신 보좌관에 대하여, 같은 조 제5항은 상근 내각총리대신 보좌관에 대하여 준용한다.
第二十三条 内閣官房に、内閣総理大臣に附属する秘書官並びに内閣総理大	제23조 ① 내각관방에 내각총리대신에게 속하는 비서관, 내각총리대신 및 각성(各省) 대신이 아닌

臣及び各省大臣以外の各国務大臣に附属する秘書官を置く。 ２　前項の秘書官の定数は、政令で定める。 ３　第一項の秘書官で、内閣総理大臣に附属する秘書官は、内閣総理大臣の、国務大臣に附属する秘書官は、国務大臣の命を受け、機密に関する事務をつかさどり、又は臨時に命を受け内閣官房その他関係各部局の事務を助ける。	각 국무대신에 속하는 비서관을 둔다. ② 제1항의 비서관의 정수는 정령으로 정한다. ③ 제1항의 비서관으로서 내각총리대신에게 속하는 비서관은 내각총리대신의, 국무대신에게 속하는 비서관은 국무대신의 명령에 따라 기밀에 관한 사무를 담당하거나 임시로 내각관방, 그 밖에 관계 각 부국의 사무를 돕는다.
第二十四条 内閣官房に、内閣事務官その他所要の職員を置く。 ２　内閣事務官は、命を受けて内閣官房の事務を整理する。	제24조 ① 내각관방에 내각사무관, 그 밖에 필요한 직원을 둔다. ② 내각사무관은 명령에 따라 내각관방의 사무를 정리한다.
第二十五条 この法律に定めるもののほか、内閣官房の所掌事務を遂行するため必要な内部組織については、政令で定める。	제25조 이 법에서 정하는 것 외에 내각관방의 소관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내부 조직에 대해서는 정령으로 정한다.
第二十六条 内閣官房に係る事項については、この法律にいう主任の大臣は、内閣総理大臣とする。 ２　内閣総理大臣は、内閣官房に係る主任の行政事務について、法律又は政令の制定、改正又は廃止を必要と認めるときは、案をそなえて、閣議を求めなければならない。	제26조 ① 내각관방과 관련된 사항에 대하여 이 법에서 말하는 주임대신은 내각총리대신으로 한다. ② 내각총리대신은 내각관방과 관련된 주임 행정사무에 대하여 법률 또는 정령의 제정·개정 또는 폐지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안(案)을 갖추어 내각회의를 요구하여야 한다.

3　内閣総理大臣は、内閣官房に係る主任の行政事務について、法律若しくは政令を施行するため、又は法律若しくは政令の特別の委任に基づいて、内閣官房の命令として内閣官房令を発することができる。 4　内閣官房令には、法律の委任がなければ、罰則を設け、又は義務を課し、若しくは国民の権利を制限する規定を設けることができない。 5　内閣総理大臣は、内閣官房の所掌事務について、公示を必要とする場合においては、告示を発することができる。 6　内閣総理大臣は、内閣官房の所掌事務について、命令又は示達をするため、所管の諸機関及び職員に対し、訓令又は通達を発することができる。	③ 내각총리대신은 내각관방과 관련된 주임 행정사무에 대하여 법률이나 정령을 시행하기 위하여 또는 법률이나 정령의 특별한 위임에 근거하여 내각관방의 명령으로서 내각관방령을 발부할 수 있다. ④ 내각관방령에는 법률의 위임 없이 벌칙 규정 또는 의무를 부과하거나 국민의 권리를 제한하는 규정을 두지 못한다. ⑤ 내각총리대신은 내각관방의 소관 사무에 대하여 공시가 필요한 경우에는 고시를 발부할 수 있다. ⑥ 내각총리대신은 내각관방의 소관 사무에 대하여 명령 또는 시달(示達)을 위하여 각 소관 기관 및 직원에게 훈령 또는 통달을 발부할 수 있다.
第二十七条 内閣総理大臣は、管区行政評価局及び沖縄行政評価事務所に、内閣官房の所掌事務のうち、第十二条第二項第十三号及び第十四号に掲げる事務に関する調査並びに資料の収集及び整理に関する事務を分掌させることができる。	제27조 내각총리대신은 관구행정평가국(管区行政評価局) 및 오키나와 행정평가사무소에 내각관방의 소관 사무 중 제12조제2항제13호 및 제14호의 사무에 관한 조사, 자료의 수집 및 정리에 관한 사무를 분담시킬 수 있다.